

# 《한국사회복지학》 투고규정 및 심사원칙

개정일: 2016년 7월 1일

## I.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일

1. 투고자격은 모든 저자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투고할 수 없다(2016.7.1. 부분수정).
2. 학회지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서평, 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으로 구분한다. 연구논문은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경험연구, 이론연구, 개관연구(논쟁을 정리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서평은 평자 기고나 저자 의뢰로 이루어지며, 저자가 서평을 원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서평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다. 또한 해당 호의 논쟁적인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실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2012.4.23. 부분수정).
3. 학회지의 원고접수는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나, 편집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 원고 접수일을 매년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로 한다. 단, 기획주제 논문에 관한 투고와 접수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학회지 출간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하며, 매호마다 15편 내외를 실는다(2016.7.1. 부분수정).
4. 투고신청서는 논문 투고시 온라인상으로 투고 논문과 함께 먼저 제출하고, 게재가 확정되면 9항에 규정된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서명 날인된 원본을 메일 또는 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논문투고 시 투고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준수 사항과 필요 양식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를 우선해서 따른다(2012.4.23. 수정).
5. 투고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2005이상 사용)를 사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투고원고가 본 학회지의 성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투고를 거부할 수 있다(2013.5.1.부분 수정).

6.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7. 타 학술지(대학논총 등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학위 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2008.8.2 부분수정).

8.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고 동일 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저자는 향후 4개호(혹은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2012.11.02 부분수정).

9.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작성 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한다(우편접수). 이를 통해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저작권이양 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원고의 투고 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2009. 1. 19 부분수정)

10. 원고 제출시 심사료 15만 원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1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불승복에 의한 재심사료는 일차 논문 심사료와 동일하다(2013. 2. 1 부분수정).

11.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25만원, 개인 연구는 15만원으로 한다. 원고의 분량은 30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 분량인 25쪽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단, 연구의 성격상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35쪽 이내까지 허용된다. (2013. 5. 1. 부분수정).

12. 한국사회복지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4년 3월 이후부터 사회복지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단, 2018년 2월까지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이행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생명윤리심의(IRB)로 갈음할 수 있다. 2018년 2월 이후 생명윤리심의(IRB) 투고 요건에 대해서는 2018년에 학회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2차 자료(패널 등)를 활용한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2016.7.1. 부분수정).

#### [편집위원회 주소]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학  
편집위원장 윤홍식교수  
전화: (032) 860-7953 Fax : (032) 860-3022 이메일: hsyoon@inha.ac.kr

논문투고 Email: welfareedit@gmail.com

논문투고 문의: 편집위원장 윤홍식 / 편집간사 신진영 010-3268-7714

학회지 심사료 및 게재료 계좌: 하나은행 890-910135-10707 (예금주: 윤홍식/  
심사료 150,000원 게재료 150,000~300,000원)

※ 논문 투고시 학회 홈페이지에서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관한 전문 (<http://www.kasw.org/>)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2011. 4. 1 추가)

※ 학회 논문 투고시 주저자(제 1저자,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고 자격을 가집니다. 또한 학회지 논문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II. 『한국사회복지학』 논문작성규정

최근 개정일 2016년 1월 1일

1.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하여야 한다.

- 1) 논문제목
- 2) 성명(소속을 성명 아래 괄호 속에 처리한다)
- 3) 국문초록(한글 600자 또는 A4 1/2매 내외)
- 4) 중심단어(6개 이내)
- 5) 본문

6) 참고문헌

7)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2매 내외): 논문제목, 성명(소속은 성명 아래), 본문 순

8) key words(영문, 6단어 이내)

9) 부록(필요한 경우)

10) 프로필

※ 단, 2) 성명, 7) 영문초록의 성명 10) 프로필은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최종본에 기술한다.

※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3. 논문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편집 프로그램

한글 소프트웨어: 한글 2002 이상(.hwp)

2) 편집용지

(1) ‘논문 제목’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7(대제목), 13(소제목), 진하게.

(2) ‘저자’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2.

(3) ‘장’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3, 진하게.

(4) ‘본문’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1.

(주석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

(5)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주석 문단모양: 들여쓰기 13 줄간격 130; 정렬방식 혼합)

(6) 용지설정: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 :194, 길이:264)

용지여백(위쪽 20, 머리말 12, 왼쪽 27, 오른쪽 27, 아래쪽 19, 꼬리말 10)

(7) 표 모양(크기: 가로 14cm, 맨 윗줄 두껍게(0.4mm), 구분 아래 두 줄 처리(0.5mm), 맨 아랫줄은 얇게(0.12mm 사용)

표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 줄간격 130.

표(그림) 제목: 중고딕, 글자크기 9.

(8) 참고문헌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1. (2016.01.01. 부분수정)

3)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25매 이내로 하며, 총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4.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 \* 이 논문은 00년도 0000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 이 논문은 00년도 0000의 연구용역보고서 "000000"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 이 논문은 필자의 00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5.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 및 교신저자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김XX+ 장XX++

+주저자 ++교신저자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 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2008.8.2 신설)

6. 국문초록은 아래 예(굴림 11포인트, 진하게, 네모 틀 안)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예)

[요 약]

본 연구는 ...

주제어 : 문제음주, 배우자 폭력, 피해자의 문제음주, 복지패널

7. 주석 및 참고문헌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준한다.

1) 주석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구분은 윤리 규정의 인용원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예 1), 본문 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예 2).

예 1) 김연옥(2012: 52)은... 예 2) ... (김연옥, 2012: 52).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예 1) Freund(2006, 67-69)는... 예 2) ... (Freund, 2006: 67-69).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김진욱과 최영준(2012: 31-33)은... , ... (김진욱 · 최영준, 2012: 31-33)  
Forrester와 Harwin(2006: 325-335)은..., ... ( Forrester and Harwin, 2006: 325-335)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본문 · 내각주 모두 “외” 를 사용한다. 영문으로 된 서적이거나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기술하며 본문의 경우 ‘외’ 를 사용하고, 내각주의 경우 ‘외’ 대신 ‘et al.’ 로 표기한다.

예) 본문: 조상미 외(2012: 29)는... , ... (조상미 외, 2012: 29). 본문: Cleaver 외 (2007: 120-125), ... (Cleaver et al., 2007: 120-125).

(5)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을 제시하며, 년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홍백의, 2005; 김진욱, 2010;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Latendresse et al., 2008)

(홍백의, 2005;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6) 영어의 ‘&’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 로 통일한다.

2) 참고문헌 작성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주석과 참고문헌이 양식에 맞게 구성하였는지의 평가는 중요한 심사항목이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으로 제한한다. 참고문헌 작성시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을 병기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학술대회발표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5) 영문으로 된 서적이거나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성(last name)을 먼저 적은 후 쉼표(.)를 하고, 이름(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6) 영문서적의 경우 단어마다 첫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저널명은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어 논문 제목과 부제는 첫 단어의 이니셜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7) 영어의 ‘&’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 로 통일한다.

8. 영문초록 및 프로필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문 초록의 제목은 휴먼명조(글자크기 15)로 작성하며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이니셜 은 대문자로 기입한다.

(2) 저자명은 성, 이름으로 표기한 후 아랫줄 괄호 안에 소속을 표기한다.

예, Yoon, Myeong So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 프로필은 저자의 소속, 연구, 관심 분야, 메일을 작성한다(최대 6줄 이내).

**예) 황진이**

00대학교 00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지적장애청소년의 시설생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4 (2). 2012, 공저),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3(3). 2011). “인권 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3(1). 2011, 공저). 『장애와 사회복지』(학지사, 2004, 공저)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질적 연구, 인권임.

E-mail: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 규정을 따른 것이다.**

**(1)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① 단독 저서의 예

김영중, 2010,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Berlin, S., 2002,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Cognitive-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2인 공저의 예

김태성 · 김진수, 2007, 『사회보장론』 3판, 서울: 청목출판사.

Hoffman, J., and Froemke, S., 2007, Addiction, New York: Rodale.

③ 3인 이상 공저의 예

엄명용 · 노충래 · 김용석, 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서울 : 학지사.

Lieblish, A., Tuval-Mashiach, R., and Zilber, T., 2006,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A: Sage.

**(2) 번역서:** 번역자 명, 역서 발행연도, 『번역서명』, 원저자명, 원서발행연도, 원서명, 소재지: 발행처

조홍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3) 편저서:**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편저자명,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인용 페이지.

정익중, 2008, “새터민 청소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해원 편,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331-348.

Wolfe, D. A., Rawana, J. S., and Chiodo, D., 2006, “Abuse and trauma“, 642-671, in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Adolescents, edited by Mash, E. J., New York: Guilford.

**(4)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논문 페이지.

① 1인 저자의 예

최옥채, 2012, “한국사회복지학 비평-형성 초기 1세대의 개론서와 역사주의 관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31-256.

② 2인 이상 저자의 예

남찬섭 · 백인립, 2011, “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 · 징수 · 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제 도통합과 조직통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2): 5-30.

김교성 · 김종건 · 안현미 · 김성욱, 2007,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 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4):319-346.

Baldry, A. D., and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at home as risk factors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 703-716.

Galaif, E. R., Stein, J. A., and Newcomb, M. D.,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 of problem alcohol use in adulthood : Exploring the influence of family factors and childhood maltreat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486-493.

③ 학위논문의 예: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대학교 ○○학위논문.

권태연, 2010, “우울수준과 음주행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신문기사:** 언론사명, 발행연도, “기사제목”, 발행년월일.

한국일보, 2012, “빈곤 사각지대 차상위층 늘었다” , 2012년 6월 5일.

The Guardian, 2010, “Doctors’ scepticism means rocky road for NHS reform” , October 24, 2010.

**(6) 인터넷 문서:** 저자명, 발행년도, “자료명(혹은 표 제목)” , 사이트 주소.  
통계청, 2011, “가구원의 만성질환” , <http://www.kosis.kr>.